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8월 12일, 이동업 의원 외 21 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8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경상북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2022년 8월 25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이동업 의원

나. 제안이유

-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 살리기운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내 하천을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관리·보전하고,
-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하천살리기운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9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가.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를 근거로 하며, 하천 살리기 운동의 공감대 조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 타 시·도의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2015.3.26.), 경기(2017.1.1.), 전남(2017.7.6.), 인천(2019.9.23.), 충남(2020.8.10.) 등 5개 시·도에서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하천살리기운동’, ‘물환경’, ‘민간단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물환경보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정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어의 정의]

< 물환경보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안 제3조**는 하천살리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으로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는 하천살리기운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지원계획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홍보,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사업으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및 감시활동,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 및 발전사업 등으로 명시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는 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 제13조1)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화와 유사·중복 위원회 정비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1)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물관리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사항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3. 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7조**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내 시·군 하천살리기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학계·기업·언론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지역별 거버넌스 활성화와 지역사회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9조**는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종합 검토의견

- 최근 기후변화 및 산업화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강과 하천의 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그간, 수질관리대책이 4대강 본류와 상수원에 집중²⁾되어 샛강·실개천에 대해서는 관심과 노력이 미흡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수질보전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경북의 경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하여 추진되어 왔음. 수계관리기금의 경우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내역을 조정한 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계기금 지원액을 확정 통보하여 수계기금 예산을 편성함.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대상 시군은 21개 시군임. 다만, 수계기금의 지원대상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낙동강수계를 중심으로 한 한정된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하천법」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방하천 중 일부 하천은 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하천 수질개선, 생태복원, 하천환경 보전활동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하천살리기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증대시키고, 하천살리기 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 또한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환경산림자원국장)의 의견 : 동의